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 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 시 제2023-28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 제6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학습에 관한 권리
 -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6. 안전에 대한 권리
- 7. 휴식을 취할 권리
-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 9. 사생활의 자유
-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11. 정보에 관한 권리
- 12. 양심·종교의 자유
- 13. 표현의 자유
- 14. 자치활동의 권리
-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17. 복지에 관한 권리
-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 20. 급식에 대한 권리
- 21. 건강에 관한 권리
-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7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 5.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 6. 학생 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생활

제8조(기본생활)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 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 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①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성 실히 수행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2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나 휴식이 필요 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① 수업 중 교사의 허가 없이 개인 소유의 휴대폰과 노트북, 테블리PC, 이어폰 등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②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③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 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13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하며,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 제14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가스총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너클 등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 침해, 혐오 표현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 9. 그밖에「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 물 등
 - ②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제15조(용모와 복장)

- ① 복장, 신발,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 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두발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검은색 계통의 염색을 허용한다.
-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⑤ 교내에서는 교복을 착용하며, 체육활동이나 기타 시간에는 예외로 한다.
- ⑥ 복장, 신발, 두발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복장, 두발 착용에 관한 규정(별첨5)'에

따른다.

제16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공유 및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7조(전자기기 사용)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8조(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되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9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20조(생활지도의 범위)¹⁾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 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1조(생활지도의 방식)2)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른 조언·제 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첨1'과 같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3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2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인성인권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으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참고인을 참석하도록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위원장 부재시 인성인권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

¹⁾ 세부 내용은 별첨6 참조

²⁾ 세부 내용은 별첨6 참조

관하다.

④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성인권부장의 제청으로 교 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제24조(의결 정족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가.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나.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

- 제26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7조(강제학습 금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과후학습, 야간 및 휴일 자율학습에서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28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 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및 구제 신청

제29조(훈육, 훈계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육, 훈계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은 세부사항은 별첨1과 같다.)
 -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5. 훼손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7.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4조 제1항 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4조 제1항 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4조 제1항 7호·9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31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17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수 있다. 압수한 물품은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 (별첨2)'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생생활교 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 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교내 봉사 : 2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 49시간 또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⑥ 훈육·훈계,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 제34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내 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실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②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및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한(1주 ~ 2주 정도)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여부 및 그 정도
 -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⑦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가급적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35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의견진술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6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 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학교장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등교일 기준)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7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38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 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9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할 수 있다.
- 제40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전북교육인권센터2023-4704)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학교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4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인성인권부장, 2학년부장, 학부모회 회장, 학부모회 부회장, 학생회장, 부학생회장(2학년), 부학생회장(1학년), 학생회 임원(학생회 운영위원회 선정)으로 구성한다.
- ③ 학생·교원·학부모 대표 선출은 각 상황과 여건에 맞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전문가 등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검토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검토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제·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45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혐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제29조 관련)3)]

생활 지도	요건		분리 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가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 지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 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 리적 다툼으로 수업 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상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 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 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행동성찰문, 교 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 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 살이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차리 및자도가필요한경우	1층 교무실, 교장실 상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60분 이내)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자함		
기타	- 지각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08:20까지 교실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결과는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경과 후 수업 참여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음)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유의점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자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하며,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한다. -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하며,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는다.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별첨2.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30조, 제31조 관련)4)]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 방법
1	수업시간에 수업과 무관 한 것을 주의를 주었음에 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스언시가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 저빔 기기 등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일지관리는 교무실무사)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 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1층 교무실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본교 14조, 17조)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제14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한다. 제17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5)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 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⁵⁾ 세부 항목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참조

별첨3.

[생활지도 기준안(제40조 관련)]

		처분		징계			
항	내용	주의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교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0	0	0	0	0	0
2	언행이 불손하고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0	0	0	0		
3	교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한 학생	0	0	0	0	0	0
4	언행이 불량하여 외부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 된 학생	0	0	0	0		
5	훈육·훈계 등의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	0	0	0	0		
6	도박(사이버) 흡연 음주금지 약물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0	0	0	0	0	0
7	본드 대마초 환각제 및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복 용한 학생	0			0	0	0
8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상습적으로 소지 하거나 사용한 학생(흡연·음주 관련 용품 소지 는 흡연자와 음주자로 간주)	0	0	0	0	0	0
9	유해 매체물을 교내로 반입·유포하거나 상습적 으로 사용한 학생	0	0	0	0		
10	타인의 금품(귀중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학생	0	0	0	0	0	0
11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하는 학생	0	0	0			
12	학교장의 허락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0	0	0			
13	불량 서클을 조직·운영하거나 가입하여 물의를 일으 킨 학생	0	0	0	0	0	0
14	인장, 제증명, 공문서를 위조 · 변조 · 사용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대여한 학생	0	0	0	0	0	0
15	학교의 허락 없이 집단행동을 모의하거나 선동한 학생	0	0	0	0	0	
16	공공시설물이나 비품을 절취하거나 고의로 파손 한 학생	0	0	0	0	0	
17	수업 준비 또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	0	0				
1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학생	0	0	0	0	0	
19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부한 학생	0	0	0	0		
2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0	0	0	0	0	0

		처분	징계					
항	내용	주의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21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0	0	0	0	0	0	
22	이성 또는 동성교제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0	0	0	0			
23	상습적으로 수업시간에 휴대폰, 전자기기를 규정 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	0	0	0	0	0		
24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이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0	0	0	0	0		
25	인터넷에서 불건전한 사이트 운영,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한 학생	0	0	0	0	0		
26	미인정 지각·결과·조퇴·결석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의 담임교사 요청 시	0	0	0				
27	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0	0	0	0	0		
28	미인정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의 담임교사 요청 시	0	0	0				
29	미인정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의 담임교사 요청 시	0	0	0	0	0		
30	경찰에 연행되어 훈방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은 학생	0	0	0	0	0	0	
31	경찰에 적발된 후 검찰에 송치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벌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					0	0	
32	경찰에 연행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학생	0					0	
33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거부한 학생	0	0	0	0	0	0	
3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0					0	
35	재학 기간 중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0	0	0	0	0	0	
36	타학생에게 혐오감을 주는 신체 문신	0	0	0	0	0	0	
37	학교용품 및 시설물 절취 사안 발생 시	0	0	0	0	0	0	
38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 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 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0	0	0	0	0	0	
39	생활지도 기준안에 명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가감할 수 있다.	0	0	0	0	0	0	

별첨4.

[금연 및 흡연 예방에 관한 규정(제14조 관련)]

내용

- 생활지도기준안 8항(별첨3)의 위반으로 선도 처분을 적용한다.
- <u>학교 내 교정에서 적발 시 2회 적발로 간주하며, 학교 건물 내에서 적발</u> 시 3회 적발로 간주한다.
- 적발 시마다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도 교원에게 적발되거나 주민의 신고로 확인된 학생은 흡연 적발로 간주한다.
- 흡연 관련 용품 소지도 교사의 판단에 따라 흡연 적발로 간주할 수 있다. ※ 적발 횟수와 관계 없이,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인성인권부장의 제청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징계

- 1회 적발 시 주의 처분(학부모 통보)
- 2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1시간 이수(학부모 통보)
- 3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3시간 이수(부모에게 공지 후 학교 소환)
- 4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3시간 이수(학부모 통보)
- 5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5시간 이수(학부모 통보)
- 6회 적발 시 금연학교 입교 및 특별교육 5일 이수(부모에게 공지 후 학교 소환)
- 7회 적발 시 특별교육 10일 이수(학부모 통보)
- 8회 적발 시 출석정지 3일(부모에게 공지 후 학교 소환)
- 9회 적발 시 출석정지 5일(학부모 통보)
- 10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일(학부모 통보)
- 11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일(부모에게 공지 후 학교 소환)
- 12회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퇴학 처분 심의 대상(학부모 통보)

별첨5.

[복장, 신발, 두발에 관한 규정(제15조 관련)]

구	분	내 용					
	동복	교복(재킷, 조끼, 와이셔츠, 하의)을 갖춰 입는다.혹한기에는 교복 위에 패딩이나 기타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복	춘추복	· 춘추복에 맞게 교복(조끼, 와이셔츠, 하의)을 갖춰 입는다.					
장	하복	• 교복(생활복 상의, 하의)을 갖춰 입는다.					
Ü	 등하교시에는 교복과 생활복만 허용되며, 체육복 등교는 허용되지 않는다. 복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와 담임의 요청에 의해 학교장 승인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예 - 아토피 등) 						
누 발	 ○ 두발의 경우 검은색 계통만 허용되며, 검은색 계통 이외의 염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 어깨를 넘어가는 장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 두발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와 담임의 요청에 의해 학교장 승인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예 - 머리의 흉터 등) 						
	실외	∘ 운동화와 단화 등 신발 종류만 허용되며, 슬리퍼 등하교는 허용되지 않 는다.(크록스, 샌들 종류는 슬리퍼에 포함된다.)					
신	실내	· 슬리퍼만 허용된다.					
발	• 신발과	한하여 슬리퍼 등하교를 허용한다.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와 담임의 요청에 의해 학교장 쳐 예외를 둘 수 있다.(예 - 골절 등)					

※ 복장·두발·신발의 상황에 따른 지도 허용 세부 기준은,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받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교장 결정으로 완화 혹은 강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징계

- 1회 적발 시 주의 처분
- 2회 적발 시 주의 처분
- 3회 적발 시 주의 처분(학부모 통보)
- 4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1시간(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5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3시간(학부모 통보)
- 6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5시간(학부모 통보)
- 7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3시간(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8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5시간(학부모 통보)
- 9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10시간(학부모 통보)
- 10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15시간(학부모 통보)
- 11회 적발 시 특별교육 5일 이수(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12회 적발 시 특별교육 7일 이수(학부모 통보)
- 13회 적발 시 출석정지 3일(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14회 적발 시 출석정지 5일(학부모 통보)
- 15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일(학부모 통보)
- 16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일(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17회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퇴학 처분 심의 대상(학부모 통보)
- ※ 적발 횟수와 관계 없이,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인성인권부장의 제청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별첨6.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생활지도의 방식]

① 조언

-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4.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상담

- 1.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항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9.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의

- 1.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훈육

- 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6. 제5호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8.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9.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1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항목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다.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라.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13.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4.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 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